#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3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김승수·김선교·김예지

서지영 · 조승환 · 박성훈

강대식 · 김정재 · 권영진

박성민 · 김희정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관의 공무담임권보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더 중하므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헌법재판관에게 고도의 정 치적 중립성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 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법률 제 호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4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			
분을 상실한 날부터 <u>3년</u> 이 경	<u>5년</u>		
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5		
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			
터 <u>5년</u> 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 <u>10년</u>		
람	_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	6		
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			
의 역할을 한 날부터 <u>3년</u> 이	<u>5년</u>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